

| | | | |
|---|---------------|------------|---|
|  <p>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p> | <h1>보도자료</h1> | 작 성 문 의 | 2016. 6. 22(수) |
| | | |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과 과장 노혜원 / 사무관 김신영 (Tel. 044-200-2415) |
| | | | 국무조정실 규제정보과 과장 이인용 / 연구관 배진한 (Tel. 044-200-2409) |
| | | |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팀장 김성수 / 사무관 김성환 (Tel. 02-6050-3294) |
| | | | 법제처 법령정비담당관 과장 이정규 / 서기관 박송이 (Tel. 044-200-6572) |
| |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조정과 과장 오광해 / 연구사 윤동섭 (Tel. 043-870-5553) |
| * 엠바고 : 6.22(수) 16:00(회의종료) 이후 사용 / 모두말씀 : 별도배포 # 브리핑 : 6.20(월) 10시, 정부세종청사, 규제조정실장 # 공동배포 :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 | | | |

총리 주재 제6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개최

▶ 인허가 신고 관련 공무원 갑질 개선

- 인허가·협의 간주제 확대 도입 및 인허가 투명화 추진
(옥외광고물 등 73개 인허가 업무, 건축허가 등 28개 복합민원)
- 신고제 편법 운영 근절을 위한 신고 규정 명확화 및 수리간주제 확대 도입

▶ 10개 기업 기술규제 애로해소

- 건설기계 형식승인 55개에서 8개로 축소, 제품당 3천7백만원 비용절감
- 고효율 에너지 인증시 부품별 인증서 대표부품인증으로 개선
- 창호 마감재 (실란트) 색상별로 탄소성적표시 인증 받던 것 색상구분 없애 84억원 절감
- 고해상도 신기술TV 에너지효율등급 적용 1년 유예 (17년 ⇒ 18년)

▶ 강원지역 현장건의 규제개선

- 임신테스트기 편의점에서도 살 수 있다. (의료기기판매업 신고 면제품목 확대)
- 800개 항목에 달하는 건설공사 신고항목 대폭 축소
- 원주공항 운영시간 연장, 강원 관광활성화

- 황교안 국무총리는 6월 22일(수) 오후, 원주 의료기기테크노밸리(원주시 지정면)에서 「제6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 이날 회의에서는 행정의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한 인허가·신고제 합리화 및 기술변화 반영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었고, 강원지역 기업인들의 애로사항 청취와 지역 현안에 대한 토의가 진행되었다.

1. 행정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한 인허가 및 신고제 합리화

- 정부는 공무원의 소극행태로 집행과정에서 부당하게 운영되거나 처리가 지연될 소지가 있는 인허가·신고제를 대폭 개선하기로 하였다.
- 이번 제도개선은 국민생활, 기업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허가, 신고제도 운영을 국민중심으로 개편한다는 의미가 있다.
- 인허가 신청에 대해 행정청이 법정기한내 처리하지 않는 경우 그 피해를 민원인이 지던 것을 행정청에 지움으로써 공무원의 기한 내 처리책임을 보다 무겁게 하고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처리지연으로 인한 민원인의 손해를 최소화 하고자 하는 것이다.
- 정부는 101개 인허가에 인허가 간주제도를 도입하거나, 처리기한이 없는 경우 기한을 설정하는 등 인허가 절차를 투명하게 하고,
 - 건축허가 등 다른 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복합민원의 경우 기간 내에 협의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협의가 된 것으로 보는 협의 간주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 또한, 집행과정에서 자의적으로 해석되거나 편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신고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한다. 법령에서 수리 필요 여부를 명확히 구분하여 자의적 해석 가능성을 없애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수리된 것으로 보는 수리 간주제도를 도입하거나 즉시 접수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두어 처리가 지연되는 행태를 근절할 계획이다.

- 현행 법령의 신고규정 약 1,300건 중 영업신고 등 경제활동 관련 신고규정 약 100건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정비과제로 선정하였으며, 나머지 1,200여건에 대해서도 하반기에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 이번 인허가·신고제 합리화를 통해 국민의 경제활동에 보이지 않는 규제로 작용했던 접수 거부, 처리 지연, 부당한 서류 요구 등 공무원의 소극적 업무처리 행태가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기업 기술규제 애로해소

- 기술규제 개선방안은 민관합동 기술규제 전문가회의인 '기술규제 포럼'을 통해 금년 상반기에 발굴한 승인·허가 등의 기술규제 관련, 기업 애로사항을 개선한 것으로,
 - 소관 부처에서 적극 수용하여 국민의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련 기술규정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시키는 조치이다.
 - 금번 발표한 10개 기술규제 개선사항 중 '실란트 탄소성적표시 인증 절차 합리화' 등 3건은 행정부 내 지침을 통해 즉시 해결하고, '포장박스에 전자파 적합성인증표시 규정완화' 등 4개 과제는 고시 등 관련 기준을 즉시 개정, 나머지 3개 과제는 업계 등과 공동 연구를 통해 금년 내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하였다.

3. 강원지역 현장건의 규제개선

- 끝으로, 강원도의 전략산업으로서 국제적 경쟁력을 더욱 높여야 하는 관광, 의료기기산업 분야 등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개선방안을 함께 모색하였으며,
 - 소규모 편의점 등을 위한 임신테스트기 등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면제 대상 확대 등을 중점 논의하여 규제를 해소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 아울러, 지역 건설업체의 애로와 관련하여, 800개 항목에 달하는 불합리한 건설현장 공사정보 신고항목을 대폭 축소하여 업계의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재건축 등 정비사업시 과도한 기부채납 관행 근절을 위한 기부채납 운영기준 근거를 마련키로 하였다.
 - 이날 참석자들은 이번 규제 개선 조치로 당장의 신규 투자는 물론, 강원도의 신성장 동력 창출에도 지속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내었다.

□ 회의에서 발표·논의된 주요 안건은 다음과 같다.

1. 인허가·신고제 합리화

▶ (개요) 인허가 및 신고제 합리화 과제 현황

| 계 | 소계 | 인허가 합리화 | | | 신고제 합리화 |
|------|------|---------|---------|--------|---------|
| | | 인허가 간주제 | 인허가 투명화 | 협의 간주제 | |
| 201개 | 101개 | 62개 | 11개 | 28개 | 100개 |

- ▶ **(특징)** 인허가·신고 절차를 보다 **투명하고 신속하게 개선**하고 공무원의 소극적 업무처리를 방지하기 위해 법령에 규정한 기간 내 처리·통지 의무를 명확화하고, 처리기간 미준수 시 **간주 규정 확대 도입**
- ▶ **(기대효과)** 국민 중심 인허가·신고제로 재편하여 인허가·신고 절차에 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집행과정상 부당한 운영 방지**
- ▶ **(향후계획)** 법률 개정 사안은 9월 정기국회 일정에 맞춰 **제출**, 시행령·시행규칙 등 **정부 내 조치사항은 신속 추진**

□ 주요 개선과제는 다음과 같다.

| 분 야 | 개요 | 주요 개선과제 |
|---------|---|--|
| 인허가 간주제 | 처리기한 내 인허가 여부나 지연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인허가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 산지전용허가, 산지 일시사용허가 ▶ 도축업·집유업·축산물가공업 등 영업허가 ▶ 민영도매시장 허가 |
| 인허가 투명화 | 처리기간 명확화, 기한 내 미처리시 연장기한, 지연사유 통보의무 등 규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연금품 모집허가 처리기한 규정 신설 ▶ 근로시간 연장인가 기간 내 처리의무 규정 |
| 협의 간주제 | 다른 기관과 협의를 필요한 경우 기간 내 협의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협의가 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장 건축허가·건축물사용승인·공장등록 ▶ 건축법상 건축허가 ▶ 마리나항만사업 실시계획 승인 |
| 신고제 합리화 | 수리가 필요한 신고와 그렇지 않은 신고를 명확히 구분 - 수리요 신고 : 처리기한 처리의무 및 기한 내 미통지시 수리간주제 도입 - 수리불요신고 : 형식적 요건 충족시 즉시 접수 의무규정 도입 | <p><수리를 요하는 신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기 수리업, 의료기기 판매업·임대업 신고 ▶ 건축신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 먹는샘물 등 유통전문판매업 신고 <p><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 ▶ 영화업 신고, 음반 신고 등 |

인허가 간주제

①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처리 절차가 개선됩니다.

- 옥외광고물 인허가·수리 간주규정 도입 (행자부) -

- (현행) 법령에서 정한 지역에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규정
* 연간 신규 광고물 허가·신고 건수 : 917,931건
- (개선) 시군구에서 옥외광고물 허가 신청 또는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처리 결과나 지연 사유를 통지하지 않으면 허가 또는 수리가 된 것으로 간주
⇒ (개선효과) 신청인의 예측가능성 제고, 과도한 처리 지연 방지

② 산지전용허가·일시사용허가 처리 절차가 개선됩니다.

- 산지전용허가, 산지 일시 사용허가 등 인허가 간주규정 도입 (산림청) -

- (현행) 산지를 조림, 숲가꾸기 등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형질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산지 복구를 조건으로 광물 채굴 등으로 일정기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도록 규정
* 연간 산지전용허가 : 약 21,000건, 산지일시사용허가 : 약 700건
- (개선) 처리기한(30일)내 미 처리, 처리 지연사유 미통보시 허가 간주
⇒ (개선효과) 신청인의 예측가능성 제고, 과도한 처리 지연 방지

협의간주제

① 공장설립 승인 이후 공장등록까지의 과정에 필요한 협의가 빨라집니다.

- 공장건축허가·공장건축물사용승인·공장등록에 협의 간주 도입 (산업부) -

- (현행) 공장의 건축허가(제14조), 공장건축물의 사용승인(제14조의2), 공장의 등록(제16조)시 의제되는 허가(15개), 검사(10개), 등록(19개) 등에 대한 협의 필요
* 연간 평균 공장 건축허가 건수 : 18,426건
- (개선) 협의기간(1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협의가 된 것으로 간주
⇒ (개선효과) 행정기관간 신속한 협의를 통해 인허가 처리 지연 방지

② 건축허가절차 진행시 의제되는 21개 인허가 협의가 빨라집니다.

-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 건축허가 협의 간주 도입 (국토부) -

- (현행) 건축물 건축시 의제되는 타 인허가 관계법령에 적합여부 협의 필요
 - (개선) 관계기관 협의시 협의기한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협의가 된 것으로 간주
- ⇒ (개선효과) 행정기관간 신속한 협의를 통해 인허가 처리 지연 방지

신고제 합리화

① 의료기기업 관련 신고 처리절차가 개선됩니다.

- 의료기기 수리업 및 판매업·임대업 신고에 간주규정 도입 (식약처) -

- (현행) 의료기기 수리업(제16조) 및 판매업·임대업(제17조)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영업소 소재지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규정
 - * 연간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 약 100건, 판매업 신고 약 4,600건, 임대업 신고 240여건
 - (개선) 의료기기 수리업 및 판매업·임대업은 수리가 필요한 신고이므로 처리기간 내 수리 여부 또는 지연 사유 미통지 시 수리된 것으로 간주
- ⇒ (개선효과) 의료기기업 신고 절차의 예측가능성 제고, 부당한 지연 처리 방지

② 농어촌 민박사업자 신고가 지체 없이 접수하도록 바뀝니다.

- 요건을 갖춘 농어촌 민박사업자 신고의 접수 의무 규정 (농식품부) -

- (현행) 농어촌 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제출
 - (개선) 시장·군수·구청장이 민박사업 신고를 받은 경우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으면 지체 없이 접수하도록 개선
- ⇒ (개선효과) 농어촌 민박사업 신고 절차 예측가능성 제고, 부당한 지연 처리 방지

2. 기업 기술규제 애로해소

- ▶ **(개요)** 기업의 기술규제 애로건의 총 11건 중 10건 수용 (수용률 91%)
 - * '영세 중소기업'에 부담 증가 요인이 있는 1건은 불수용
- ▶ **(특징)** 시험검사·인증·표시규정 등으로 인한 기업부담 개선
 - (중복인증·신고 개선) 모델·색상별로 중복 요구하는 인증·신고를 단일 모델·색상으로 통합토록 개선 → 기업 인증비용 경감
 - * ▲ 건설기계(지게차) 형식신고 모델 축소 ▲ 탄소성적표지 색상별 인증 폐지
 - (글로벌 기술·제품 지원) 새로운 시험방법·기술 및 글로벌 기술선도 제품 등의 상용화·개발을 지원 → 신기술·상품 시장출시 지원
 - * ▲ 미생물시험법(식중독균) 자동화기기 도입 ▲ OLED, UHD TV 등의 에너지효율기준 강화시기 유예 ▲ 보행기 안전확인 국제기준 도입 ▲ 초소형제품의 전자파인증 제품표기 완화
 - (시험·검사·표시기준 개선) 불필요한 시험·검사 및 표시규정 최소화 → 기업의 창의적 경영활동 지원
 - * ▲ 포장박스 KC인증 의무표시 규정 완화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복수등록 허용 ▲ 실내·외 창호 분류기준 마련 ▲ 전기·전자 완구의 전파인증(EMC) 완화
- ▶ **(기대효과)** 기업의 시험·검사·인증 수수료 절감 등 기술변화를 반영한 기술규제 합리화를 통해 시장경제 활성화
- ▶ **(향후계획)** 즉시시행(3개, 지침시달), 고시개정(4개, 개정착수), 공동연구(3개, '16년 內 마무리)

즉시이행 과제 (3개)

① 실란트(창호용 마감재) 탄소성적표지 인증절차가 개선됩니다.

- 색상별 구분을 없앴 (환경부) -

- **(현행)** 「탄소성적표지 인증」*은 실란트 제품군 및 색상별로 구분하여 인증하고 있음
 - * 제품과 서비스의 생산·유통·사용·폐기 등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품에 표기하여 소비자에게 제공, 저탄소 소비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
 - **(개선)** 배출량 차이가 적은 경우 색상구분(흑색, 백색, 회색 등)을 없애고, 제품군으로 인증
- ⇒ **(개선효과)** 관련업종 약 20개 기업의 인증비용* 84억원 절감
- * 1 색상 당 인증 약 600만원, 컨설팅 약 400만원 소요

② 건설기계(지게차) 형식신고 모델구분이 축소됩니다.

- 기존 55개 모델구분에서 8개로 축소 (국토부) -

- (현행) 지게차를 제작·조립하는 자는 55개 세부 모델별(마스트, 타이어 등)로 형식 신고하여야 함
- (개선) 모델구분을 현행 55개에서 안전 등을 고려하여 8개 모델로 축소
⇒ (개선효과) 건설기계 기업의 직접비용(제품당 약 3천7백만원)* 및 간접비용(물류처리 비용, 검사서류처리 등) 절감

* 제품 당 직접비 절감효과 = (신고비 52만원 + 출장확인 검사비 26만원) * 47개 모델 = 약 3천7백만원

③ 미생물(식중독균) 검출방법의 정확도를 향상합니다.

- 시험 자동화를 통한 검사시간 축소 및 오차 최소화 (식약처) -

- (현행) 기존 시험법*은 시료 처리 과정이 많아 검사시간이 오래 소요되며, 실험자의 숙련도 및 검사방법에 따라 오차 발생의 여지가 있음
* 세균 증식을 위해 고안된 액체(젤)상태의 영양원에 약 18-24시간 정도 배양 후 검출
- (개선) 기존 방법 외에 새롭게 검증된 “자동화된 기기시험법” 허용토록 개선
⇒ (개선효과) 새로운 시험법 및 기기의 이용 활성화로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

기준 개정 과제 (4개)

① 신기술 TV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 강화시점을 현실화합니다.

- `17년에서 `18년으로 1년간 유예 (산업부) -

- (현행) TV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 강화시점을 `17.1월로 예정하였으나, 신기술 제품(고해상도)은 현재 1등급 달성이 불가능함
*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의거, 에너지소비효율 또는 에너지사용량에 따른 효율등급 (1-5등급, )을 표시
** EU도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나, 시행시기는 미정
- (개선) 고효율 신기술제품의 개발 소요기간을 고려, 적용시기를 유예(`17년→`18년)
⇒ (개선효과) 신기술 제품의 에너지효율 개선 위한 기술개발 기회 제공

② 보행기 안전확인기준을 국제수준으로 합리화합니다.

- 뒷바퀴 방향고정형 제품 출시가능 (산업부) -

- (현행) 어린이제품의 하나인 보행기 바퀴가 전후좌우(4방향) 모두 원활히 움직일 것을 강제하고 있으나, 외국의 경우 관련 규정 없음
 - (개선) 뒷바퀴 고정형 등의 다양한 제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4방향 의무규정 폐지
 - *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개정
- ⇒ (개선효과) 국제기준 보다 과도한 기준을 개선, 국내 기업의 창의적 제품개발 지원

③ Wi-Fi 등 무선제품 표시요건이 완화됩니다.

- 제품 본체 外 포장·설명서 등에도 표기 가능 (미래부) -

- (현행) Wi-Fi, 블루투스 등의 소출력 무선기기의 경우 전파혼신 가능성을 반드시 제품에 표시토록 강제, 제품 크기 소형화로 표기공간 부족 문제
 - (개선) 제품 본체 뿐만 아니라 포장이나 설명서 등에 표기 가능토록 개선
- ⇒ (개선효과) 제품소형화 추세에 따른 기술개발, 디자인 등의 기업 자율성 확대로 국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

④ 불필요한 라벨링, 인쇄 등을 최소화합니다.

- 방송통신기자재 포장박스의 KC인증표시 사업자 선택 가능 (미래부) -

- (현행) 방송통신기자재는 제품에 표시한 인증정보를 포장박스에도 표시토록 강제, 그러나, 외국은 관련규정 없으며 국내 전기용품 안전인증도 제품에 인증 표시가 있는 경우 포장에는 생략 가능
 - (개선) 인증정보가 제품에 표시된 경우 포장박스 표시의무 폐지
 -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표시기준 및 방법」 등 개정
- ⇒ (개선효과) 불필요한 포장박스 인증표시 의무 규정 개선을 통해 기업부담 경감

관련업계 공동연구 과제 (3개)

①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시 효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품에 대해서는 대표 부품만 인증 받으면 됩니다.

- 복수부품 등록을 통해 인증비용 및 소요시간 단축 가능 (산업부) -

- (현행)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시 효율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여부와 관계 없이 부품을 별도로 인증 받도록 규정
 - * 고효율제품의 보급활성화와 초기시장 형성을 위한 제도로,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효율이 일정기준 이상을 만족하는 제품에 대해 인증 
- (개선) 관련 연구결과('16.9월)를 토대로, 고효율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품이 있는 경우 복수 등록이 가능토록 조치

②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등록가능한 창호의 범위를 확대합니다.

- 복도창 등 실내창호는 3등급까지 설치 가능 (산업부, 조달청) -

- (현행) 조달청의 종합쇼핑몰에서 창호는 2등급 이상(실외 창 기준)의 제품만 등록할 수 있어, 실내 창에 적합한 3등급 제품은 공공조달 진입불가
- (개선) 3등급 실내창호 등급기준 마련, 조달청 쇼핑몰에 제품등록 가능토록 조치

③ 전기·전자 완구의 전자파시험(EMC) 대상을 축소합니다.

- 전자파로 인한 문제가 없는 제품은 EMC시험에서 제외 (미래부) -

- (현행) 모터나 회로 등을 포함하는 완구의 경우, 크기와 가격, 위해성에 상관 없이 전자파시험*(EMC)을 받아야 함
 - * 해당 기자재가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정한 전파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스스로 시험하거나 타인에게 위탁 시험하여 미래부에 등록
- (개선) 업계 등과 공동연구 통해 위해제품 범위 확정, 문제없는 제품은 EMC* 시험대상에서 제외
 - * EMC(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전자파양립성) : ①제품으로부터 방사되는 전파에 의해 주변에 악영향을 미치는 현상(EMI : Electro-Magnetic Interference)과 ②주변에 존재하는 방해전파에 의해서 제품의 정상동작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내성(EMS : Electro-Magnetic Susceptibility)을 총칭

3. 지역 현장건의 규제개선 주요 과제

- ▶ (개요) 강원 지역 기업들의 현장 규제 애로 6건 수용
- ▶ (내용) 의료기기판매업 신고 등의 면제 범위 확대, 건설현장 정보신고서 (건설공사대장)의 신고항목 간소화 등

①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면제 품목을 확대합니다.

- 임신진단테스트기,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면제 품목에 추가(식약처)

- (현행) 의료기기를 판매하고자 할 경우 판매업 신고 필요
 - 혈당측정기, 체온계, 혈압계 등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사용되는 자가진단용 의료기기는 판매업 신고 면제
 - (개선) 자가진단용 의료기기 중 유통 중 품질문제 등 발생 가능성이 적은 임신진단테스트기를 판매업 신고 면제 품목에 추가
 - *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개정('16.12월)
- ⇒ (개선효과) 신고에 따른 유통관리기준 준수 등 행정부담 감소 및 국민생활과 밀접한 의료기기의 접근성 증대

② 국유림 광구내 적치된 혼합토석 매각시 채석경제성평가를 거친 경우 석재 및 토사를 선별하여 매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채석경제성평가를 거친 경우 그 결과를 감정평가시 매각대금 산정에 반영(산림청)

- (현행) 국유림 광구내 적치된 혼합토석을 쇄골재용으로 사용·판매하려면 채석경제성평가 없이 전체 물량으로 감정평가하여 매각함
 - (개선) 전문기관에 의한 채석경제성 평가를 거친 경우 석재량과 토사량을 구분하여 감정평가 시 매각대금 산정에 반영하여 매각할 수 있도록 함
 -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개정('16.11월)
- ⇒ (개선효과) 적치된 혼합토석 활용도 제고 및 골재생산업체 채산성 향상에 기여

③ 부실초지를 임야로 환원할 때, 자연적인 산림은 다시 조림할 필요가 없습니다.

- 부실 초지의 환원 비용절감 및 친환경적 생태환경 조성(농식품부)

- (현행) 부실 초지를 (종전 지목) 임야로 환원할 경우, 산림 또는 산지에 적합하도록 조림할 의무
 - (개선) 산림 또는 산지에 적합한 입목이 조성된 경우, 관련부서 협의로 조림 필요여부 판단
 - * 「초지 환원 시 조림 방법」에 관한 유권해석을 공문으로 시행('16.6월)
- ⇒ (개선효과) 부실 초지를 임야로 환원하는 조림비용(1ha당/약500만원) 절감 및 친환경적 생태환경 보호

④ 원주공항의 운영시간이 늘어납니다.

- 원주공항 운영시간(09:00~18:00) 연장(국토부)

- (현행) 원주공항은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만 운영하여 민간항공기의 야간운항 등에 애로
 - (개선) 민간항공기의 야간운항이 가능토록 운항안전·소음영향 등을 검토한 후 원주공항의 운영시간을 연장
 - * 원주공항 운영 변경시간을 AIP(항공정보간행물)에 등재 ('16. 9월)
- ⇒ (개선효과) 항공기 증편운항(워주-제주 등) 등을 유도하여 강원도민의 편익 증진 및 원주공항 활성화 기대

⑤ 건설기업의 행정부담이 크게 완화됩니다.

- “건설현장정보신고서”(건설공사대장)의 신고항목 간소화로 행정부담 완화(국토부)

- (현행) 건설업자는 ‘건설현장 공사정보’를 기재한 신고서(건설공사대장)를 발주자·건축주에게 신고 의무화
 - 신고항목이 평균 800개 정도 되고, 대부분 내용을 발주자·건축주가 기 보유하고 있음에도 또 다시 신고(별도 전산망)토록 하여 행정부담 가중
- (개선) 존치할 필요가 큰 항목만 남겨 신고항목을 축소하고, 신고누락 방지 위해 모바일 등을 이용한 ‘사전 알리미 서비스’제도화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17.상반기)

⇒ (개선효과) 연간 규제비용 약 1,000억원 이상 절감 예상

- * 전국 약 8만개 현장에서 약 1,600여 억원의 행정비용 소요 추정(건설산업연구원)
- * 행정비용 산출근거 : 1개월에 1회 입력, 1인 현장기술인력 1일 업무량 가정
 - 약 1,610억 = 8만개 현장 × 12회 입력(1년) × 168,571원(일평균 임금, 건설협회)

⑥ 과도한 기부채납 관행이 근절됩니다.

-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기부채납 운영기준 근거 마련(국토부)

- (현행)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대한 명확한 기부채납 운영기준이 없어, 일부 지자체의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 등 사업 부담 가중
- (개선) 정비사업에 대해 지자체의 기부채납 요구를 합리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기부채납 운영기준 고시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16.12월)

⇒ (개선효과)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를 없애 분양가 인하 및 조합원 부담 경감

※ (참고) 기술규제 개선과제

참고

기술규제 개선과제

○ 산업부, 미래부, 환경부 등 6개 부처 총 10건

* 산업부 3개, 미래부 3개, 환경부 2개, 식약처 1개, 국토부 1개, 산업부·조달청 공동과제 1개

① 즉시이행 과제 (3개)

- 규정 해석에 관한 사항으로 관련부처는 해당 인증기관 등에 지침통보 등을 통해 즉시 반영·이행토록 할 예정

| | 제목 | 부처 | 주요 개선요청 내용 | 조정 결과 |
|---|-----------------------|-----|--|--|
| 1 | 실란트 탄소성적표지 인증절차 합리화 | 환경부 | 저탄소 인증의 경우 실란트 제품군 및 색상별로 인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인증비용 과다 발생 ☞ 색상별로 배출량 차이가 적은 만큼 인증모델구분 개선 필요 | 색상 모델별 → 단일제품 인증 변경 (색상별 배출량차이가 없는 제품에 한함) |
| 2 | 건설기계(지게차) 형식신고대상 합리화 | 국토부 | 건설기계(지게차) 형식신고의 대상이 옵션별로 되어있어, 인증 취득을 위한 업계 부담 가중 ☞ 형식승인대상 구분 조정 | 형식승인 모델구분 축소 (55개→8개) |
| 3 | 미생물시험법(식중독균) 검출 방법 개선 | 식약처 | 식중독균의 검출 분석기법을 기존 기법으로 한정, 신속히 분석할 수 있는 최신 분석기법 배제로 시간낭비 초래 ☞ 신뢰도 높은 식중독균 검출기법 적용 | 다양한 최신 분석법 인정토록 지침배포 |

② 기준개정 과제 (4개)

- 개선내용을 반영하여 관련규정 개정

| | 제목 | 부처 | 주요 개선요청 내용 | 조정 결과 |
|---|------------------------|-----------|--|---|
| 1 | TV 에너지효율기준 강화 시행시기 현실화 | 산업부 | TV 에너지 소비효율등급기준 강화 추진 중으로 기준 강화시 고화질(UHD 등) TV 1등급 달성 불가 ☞ 규제 시행시기('17.1.1) 유예 요청 | 업계의견 반영 유예기간 연장 *효율관리기자재운용 규정 |
| 2 | 보행기의 안전확인기준 개정 | 산업부 (국표원) | 모든 바퀴가 4방향으로 움직일 것을 강제하고 있으나, 외국의 경우 뒷바퀴가 고정형인 제품도 허용 ☞ 조작방향에 대한 제한규정 삭제 | 조향방향 제한규정 삭제 *어린이안전기준 |
| 3 | 무선설비기준 제품표시요건 완화 | 미래부 | 전자파 인증 표기(전파혼신 가능성여부 알림)를 제품에만 표기토록 함 ☞ 제품의 크기가 작아 질수로 표기공간이 부족하여 라벨표시기준 완화 요청 | 제품 본체 외 포장·설명서 등에 표시토록 규정개정 *무선설비규칙 |
| 4 | 포장박스 KC인증표시 규정 완화 | 미래부 | KC 인증정보를 포장박스 및 제품 모두에 표시토록 의무화하여 비용부담 가중 ☞ 포장박스 표시 규정 삭제 또는 완화 | 포장박스 표시 의무 완화 (업체 선택)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관한 고시 |

③ 관련업계 협의·연구 결과 반영 과제 (3개)

- 개선요청 내용에 대해 관련 업계 협의·연구를 통해 반영·조치

| | 제목 | 부처 | 주요 개선요청 내용 | 조정 결과 |
|---|--------------------------------|------------------|---|---|
| 1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안전관련 부품에 대한 복수 등록 허용 | 산업부 | KC 및 KS인증에서도 인증부품 복수 등재를 허용하고 있으나 동 인증의 경우 허용되지 않아 인증비용 과다 발생 ☞ 성능과 관련없는 부품에 대한 복수등록 허용 | 업계와 공동 연구('16.9)하여 복수등록 반영 검토 |
| 2 | 창호(실내창)의 환경 표지 인증기준 확대 | 산업부 (국표원) 조달청 |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환경표지 인증 대상을 실내 실외로 구분하지 않아 보다 높은 기준의 실외 기준으로 인증함에 따른 인증비용 부담 ☞ 효율 등급이 낮은 실내창호에 대해 별도로 조달 시장에 등록될 수 있도록 명문화된 조항 필요 | KS 실내창호 등급기준 마련 (국표원 '16.9) → 종합쇼핑몰 제품등록 추진 (조달청) |
| 3 | 전기·전자 완구에 전파법 적용 | 미래부 | 모터가 들어간 완구는 EMC시험을 받도록 하고 있어, 저가 완구 수입업자에 시험비용부담 ☞ EMC 및 EMI 등 인증적용대상 재분류 필요 | 적용대상 재분류 → EMC 시험대상 축소 검토 ('16. 말) (검사비 200→50만원 경감) |